

투자권유준칙

소관부서 : Customer Protection Team

제 정	:	2020.	11.	18
전면개정	:	2021.	12.	24
개 정	:	2024.	01.	01
개 정	:	2024.	02.	29
개 정	:	2024.	06.	03
개 정	:	2024.	10.	22
개 정	:	2025.	06.	27
개 정	:	2026.	01.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금소법 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

한다.

2.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5.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집합투자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나. 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신용공여 등)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④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경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2.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

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 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별지 제11호]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3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투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투자유형)을 안 후에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면으로 투자자정보를 파악할 경우 투자자정보 중 금융지식 및 이해도,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 수준 등 통상적으로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이 불가하다. 다만,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투자자 요청시 변경

가능하다.

2. 온라인으로 투자자정보를 파악할 경우 투자자의 변경 재등록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정보 변경 가능횟수를 1일 최대 3회로 제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정보 변경 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가 동 사규 제16조와 [별지 제17호]에 따른 투자성상품 위험등급의 재산정 대상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금융상품을 추가 매수하면, 추가 매수 시점(자동적립은 자동적립 서비스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성향(투자유형)이 부적합 또는 부적정한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별지 제11호]를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인식시키고 추가 적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변경된 위험등급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투자유형)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⑦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2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5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투자유형)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투자자성향(투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투자유형)과 금융투자상품

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투자유형)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투자유형)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2.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투자유형)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자성향(투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⑦ 임직원 등은 제1호의 투자자에게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⑧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 등은 고령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1항 따른 [별지 제5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7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다. 제1항 제4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2)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3. 금소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투자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4. 투자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투자자로부터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투자유형)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 2제3항제2호에 따른 목표시장의 설정기준에 부합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 ⑥ ⑤에도 불구하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가 스스로 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교부하고,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를 징구하는 경우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의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자성향(투자유형)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성향(투자유형)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 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 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⑪ 회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상품구조의 정확한 이해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숙려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투자권유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

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5조의2(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7호]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별지 제4호]와 같이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1. 기초자산의 변동성
2. 신용등급
3. 상품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5. 환매·매매의 용이성
6. 환율의 변동성
7.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지 제17호]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

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 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2(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금소법 제46조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 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7의2 및 제17조의3에서 '서면 등' 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이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법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을 말한다.

④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

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⑦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에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⑧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⑨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⑩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⑪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금소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제 제3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자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국내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채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2. 채권의 매매수익률, 매매단가
3.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
4. 채권 투자 특징으로서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

② 임직원 등은 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그래프 등으로 제공)
2.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3. 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증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4.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

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과거에 채권을 판매하였으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여 현재 거래가능 종목에서 제외한 경우 관련 채권의 정보 및 제외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 사유는 발행사의 부도, 신용등급의 투자부적격 등급 하락 등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통지를 제외할 수 있다.

1.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임박한 채권
2. 단순히 판매물량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된 채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5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성상품]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인용)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일임 및 신탁(비지정형) 계약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 희망	☐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정보제공	☐ 정보 미제공

투자성향

분류	질문항목	답변항목	배점
연령	나이 구간	☐ 만 19 세 미만	1
		☐ 만 19 세 이상 ~ 만 30 세 미만	3
		☐ 만 30 세 이상 ~ 만 65 세 미만	5
		☐ 만 65 세 이상 ~ 만 80 세 미만	2
		☐ 만 80 세 이상	1
투자목적	내가 투자하는 이유는	☐ 자산 늘리기	5
		☐ 생활비 마련	2
		☐ 채무상환	-5
재산상황	내 연 소득은	☐ 3 천만원 미만	1
		☐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미만	2
		☐ 5 천만원 이상 7 천만원 미만	3
		☐ 7 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4
		☐ 1 억원 이상	5
	전체 자산 중 금융 자산의 비중은	☐ 10% 미만	1
		☐ 10% 이상 ~30% 미만	3
		☐ 30% 이상 ~50% 미만	4
		☐ 50% 이상	5
투자경험	지금까지 투자해본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선물·옵션, 주식 신용거래, 레버리지·인버스 ETF,	10

		☐ 주식, 원금 비보장형 ELS, 주식형 펀드	8
		☐ 원금보장형 ELS, 혼합형 펀드	6
		☐ ELB, 채권형 펀드	4
		☐ 예금·적금	2
		☐ 투자 경험이 없어요	0
금융지식 및 이해도	나는 주식, 채권, 펀드를	☐ 거의 모른다	0
		☐ 조금 안다	3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
		☐ 잘 알고 있다	5
원금보존추구여부 및 손실감내 수준	투자 수익을 위해	☐ 원금을 잃을 수는 없다	0
		☐ -10% 손실까지 참을 수 있다	3
		☐ -20% 손실까지 참을 수 있다	3
		☐ -50% 손실까지 참을 수 있다	4
		☐ -70% 손실까지 참을 수 있다	4
		☐ 전체손실도 참을 수 있다	5
투자의예정기간	나는 투자를	☐ 1년 안에 그만둘 것이다.	1
		☐ 3년 안에 그만둘 것이다.	3
		☐ 3년 이상 계속할 것이다.	5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투자경험	파생상품 투자 경험은	☐ 1년 미만	1
		☐ 3년 미만	3
		☐ 3년 이상	5

자금성향

분류	질문항목	답변항목
투자목적	내가 투자하는 이유는	☐ 자산 늘리기 ☐ 생활비 마련 ☐ 채무상환
원금보존추구여부 및 손실감내 수준	투자 수익을 위해	☐ 원금을 잃을 수는 없다 ☐ -10% 손실까지 참을 수 있다 ☐ -20% 손실까지 참을 수 있다 ☐ -50% 손실까지 참을 수 있다 ☐ -70% 손실까지 참을 수 있다 ☐ 전체손실도 참을 수 있다
투자에정기간	나는 투자를	☐ 1 년 안에 그만둘 것이다. ☐ 3 년 안에 그만둘 것이다. ☐ 3 년 이상 계속할 것이다.

☐ 취약 금융소비자 확인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	------------------------------

- 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문맹자, 장애인, 투자 무경험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 항목에 체크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 직원은 금융소비자가 투자성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향후 24 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투자자 _____(서명/인)

대리인 _____(서명/인)

[투자성상품]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용)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일임 및 신탁(비지정형) 계약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 희망	☐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정보제공	☐ 정보 미제공

분류		질문항목	배점
법인유형		☐ 거래소 상장 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5
		☐ 코스닥 상장법인	4
		☐ 비상장 외부감사법인	2
		☐ 그외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1
투자목적	취득 및 처분 목적	☐ 자산 늘리기	5
		☐ 운영자금 마련	2
		☐ 채무상환	-5
재산상황	연간 순이익 규모	☐ 50 억원 이상	5
		☐ 1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4
		☐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3
		☐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2
		☐ 1 억원 미만	1
	전체 자산 중 금융 자산의 비중은?	☐ 10% 미만	1
		☐ 10% 이상 ~30% 미만	3
		☐ 30% 이상 ~50% 미만	4
		☐ 50% 이상	5
투자경험	지금까지 투자해 본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레버리지 및 인버스 펀드(ETF), 신용거래, 선물·옵션	10
		☐ 주식, 펀드(주식형), 원금 비보장형 ELS, 투기등급 회사채	8
		☐ 펀드(혼합형), 원금부분지급형 ELS, 일반 회사채	6
		☐ 펀드(채권형), ELB, A 등급 이상 채권	4
		☐ 예금·적금	2

		☐ 투자 경험이 없어요	0
금융지식 및 이해도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해	☐ 거의 모른다	0
		☐ 조금 안다	3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
		☐ 잘 알고 있다	5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 수준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 어느 정도 손실까지 참을 수 있나요?	☐ 원금을 잃을 수는 없다	0
		☐ 적은 손실은 참을 수 있다	3
		☐ 어느 정도 손실은 참을 수 있다	4
		☐ 많은 손실도 참을 수 있다	5
투자에정기간	앞으로 얼마 동안 투자할 계획인가요?	☐ 1 년 미만	1
		☐ 1 년 이상 ~ 3 년 미만	3
		☐ 3 년 이상	5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투자경험	레버리지 및 인버스 펀드(ETF), ELS 등 파생형 상품에 투자한 경험은 얼마나 되세요?	☐ 1 년 미만	1
		☐ 1 년 이상 ~ 3 년 미만	3
		☐ 3 년 이상	5

☐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향후 24 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법인명 _____(서명/인)

대리인 _____(서명/인)

[대출성상품]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개인용)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항목	답변항목
연령	☐ 만 19 세 미만
	☐ 만 19 세 이상 ~ 만 30 세 미만
	☐ 만 30 세 이상 ~ 만 65 세 미만
	☐ 만 65 세 이상 ~ 만 80 세 미만
	☐ 만 80 세 이상
대출 목적을 알려주세요.	☐ 금융상품투자 (주식포함)
	☐ 가계 자금
	☐ 법인 자금
보유 중인 자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 1 억 이하
	☐ 5 억 이하
	☐ 5 억 초과
	☐ 10 억 초과
연 소득을 알려주세요.	☐ 5 천만원 이하
	☐ 1 억원 이하
	☐ 1 억원 초과
최근 연체중인 대출이 있나요?	☐ 없어요
	☐ 있어요
대출은 어떻게 갚을 예정이에요?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기타 소득
신용점수	☐ 680 점 이상
	☐ 680 점 미만
	☐ 모름

☐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신용점수, 원리금 연체 여부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향후 24 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투자자 _____(서명/인)

대리인 _____(서명/인)

[별지 제2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	--------------------------------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 [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	☐	☐	☐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	☐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	☐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	☐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 투자자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향후 24 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직위 _____ 담당자 _____(서명/인)
 법인명 _____(서명/인)

☐ 토스증권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토스증권이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년 월 일

토스증권 지점/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서명/인)

[별지 제3호]

투자유형 분류 기준

1. 분류 기준

가. 투자성향

-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성향의 각 질문항목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5단계로 분류한 투자성향과 매칭하여 확정함

나. 자금 성향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자금성향의 각 질문항목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확인하고, 답변에 따른 적합한 상품을 매칭하여 확정함

2. 분류 결과

가. 투자성향

합산 점수	투자성향
10 점 이하	안정형
10 점 초과 20 점 이하	안정추구형
20 점 초과 30 점 이하	위험중립형
30 점 초과 40 점 이하	적극투자형
40 점 초과 50 점 이하	공격투자형

※ 총 합산 점수 50점

나. 자금 성향

답변 항목		자금성향
원금보존추구 여부 및 손실감내 수준	원금을 잃을 수 없거나 -20%까지 손실감내 가능	부적합
그 외		적합

[별지 제4호]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

1. 금융투자상품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등급)	높은 위험 (2 등급)	다소 높은 위험 (3 등급)	보통 위험 (4 등급)	낮은 위험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6 등급)
고객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집합투자 증권 ^{주1)}	자산운용사가 정한 상품 위험등급 사용					
	매우 높은 위험 (1 등급)	높은 위험 (2 등급)	다소 높은 위험 (3 등급)	보통 위험 (4 등급)	낮은 위험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6 등급)
국내상장 ETF						
주식 등	해외주식 ^{주2)} , 비상장주식, 신용거래, 투자주의·경고 ·관리종목, ETN, ELW, 파생형 ETF (레버리지·인버 스 ETF 포함) ^{주3)}	매우 높은 위험(1 등급) 이외 종목				
국내 채권	B+ 이하 또는 무등급, 조건부자본증권	BB- ~ BB+	BBB- ~ BBB+	A- ~ A+	AA- ~ AAA	국공채 등 ^{주4)}
CP /전자단기사채	B+ 이하 또는 무등급	A3-	A30 ~ A3+	A2- ~ A2+	A1	
해외채권 ^{주5)}	BB+ 이하	BBB+ ~ BBB-	A+ ~ A-	AA- 이상		
투자일임 /신탁계약	편입자산 금융투자상품 중 가장 높은 위험도를 적용하되, 별도의 자산배분 위험도 ^{주6)} 가 존재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상품 출시 관련 의사결정 기구의 적정성 검토 필요)					

주1) 집합투자증권 판매 전, 상품 출시 관련 의사결정 기구(예시: 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 검토

주2) 해외주식은 당사 해외주식 약정 거래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해외 상장 상품(ETF, ETN 등)을 통칭하여 표현하며, 환위험 등을 고려하여 일괄 1등급으로 적용함

주3) 자본시장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파생형 집합투자증권을 지칭하며, 자산운용사가 정한 상품 위험등급과 별도로 일괄 1등급을 적용함

주4)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주5) 해외채권은 국제신용평가사 등급 기준 (예시: S&P, Fitch, Moody's)

주6)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 위험도 유형, 상품개발 부서의 포트폴리오 위험도 평가 기준 등

※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상 정의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은 관련부서^{주7)}에서 위험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 출시 관련 의사결정 기구(예시: 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검토 후 확정하면, 사규 개정을 본 건 별지 제4호에 반영함

주7) 신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 등을 기획하거나 제반업무 등을 준비하는 부서

2. 장외파생상품

구분	주의	경고	위험
장외 파생상품	원금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금리스왑, 옵션매수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별지 제5호]

1.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권유 적합성 판단 기준

가. 투자성향

구분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안정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 불가					
공격투자형						

주1) 고객 투자성향(5등급):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주2)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6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주3) 장외파생상품은 별도의 적합성 판단 기준 적용

나. 자금성향

답변 항목		자금성향
원금보존추구 여부 및 손실감내 수준	원금을 잃을 수 없거나 -20%까지 손실감내 가능	부적합
그 외		적합

2. 대출성상품 적합성/적정성 판단 기준

- 최근 연체중인 대출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680 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부적정으로 판단

[별지 제6호]

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 적합성 판단 기준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매도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금융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2. 고령투자자의 정의

-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라 한다.
- 고령투자자 중 만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라 한다.

3. 고령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기준

가.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권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Retail Specialist팀을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 다만, 고객의 이용편의 및 맞춤형 상담을 위해 ARS 매뉴얼 담당자가 고객응대를 진행하고 이후 필요시 전담인력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팀은 금융감독원 등 대외기관에 접수되는 고령투자자의 민원현황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나.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원(지점장 등)이 투자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대면 영업조직이 없을 경우 사전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리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등을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관리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거나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 회사는 검토결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에 반영하거나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녹취제도 및 숙려제도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바. 계약체결에 대한 지정인 확인(지정인확인서비스)

- 회사는 고령투자자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령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중에 고령투자자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고객의 계약체결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고령투자자와 함께 숙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4. 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조력자와의 상담 또는 사전확인관리자의 동석

-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별도의 대면 영업조직이 없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초고령투자자는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사전 확인 관리자가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별지 제8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 : 고객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시에는 체크 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별지 제9호]

투자자성향(투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투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투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또는 투자자의 자금성향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가입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고객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3.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4. 투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5.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게 금융회사는 투자권유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성 진단 결과	투자성향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투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공격투자형	매우 높은 위험 이하 상품
적극투자형	높은 위험 이하 상품
위험중립형	보통 위험 이하 상품
안정추구형	낮은 위험 이하 상품
안정형	매우 낮은 위험 이하 상품

현재 투자자금 성향 정보	투자 목적	()
	원금보존추구 여부 1) 및 손실감내수준 2)	()
	투자예정기간 3)	()

- 1)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경우 투자권유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됩니다.
- 2)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손실감내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투자권유가 제한됩니다.
- 3)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투자예정기간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상품구조상 만기까지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은 투자권유가 제한됩니다.

[별지 제10호]

적합성 보고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계좌번호 :
-------	--------

☐ 투자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고객연령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이해도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 수준	
투자예정기간	
파생형 상품 투자경험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OOO 형	
투자권유 상품	

※ 별지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에 따른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투자권유 가능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예시) 고객이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핵심 유의사항	(참고사항)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투자자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토스증권 지점명 _____ 작성자 _____(서명/인)

[별지 제11호]

투자성상품 부적정 거래 확인 및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성상품 : _____

☐ 고객정보 확인 결과

연령	
투자목적	
연소득	
금융자산 비중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이해도	
원금보존추구 여부 및 손실감내 수준	
투자예정기간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투자 경험	

☐ 투자자 확인사항

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성향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투자성향별 적정한 투자성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공격투자형	매우 높은 위험 이하 상품
적극투자형	높은 위험 이하 상품
위험중립형	보통 위험 이하 상품
안정추구형	낮은 위험 이하 상품
안정형	매우 낮은 위험 이하 상품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종합	부적정
이유	투자성향 대비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이 높음

□ 투자자 유의사항

- 동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년

월

일

투자자 _____(서명/인)

대리인 _____(서명/인)

대출성상품 적정성 판단 보고서

□ 계약을 희망하는 대출성상품 : _____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종합	부적정
이유	■ 확인된 고객님의 신용점수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대출성상품은 고객님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점수 예시) ■ 확인된 고객님의 원리금 연체 상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대출성상품은 고객님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체 중 예시)

□ 고객 정보 확인 결과

연령	
대출 목적	
보유자산 현황	
연 소득 현황	
원리금 연체 여부	
변제계획	
신용점수	

□ 투자자 유의사항

-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신용공여가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투자자 _____(서명/인)

대리인 _____(서명/인)

[별지 제12호]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

■ 고객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매우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불가여부 등 해당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4.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자기 판단을 과신하거나 과거 일부 고수익 사례에 대한 대표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과소 평가하여 투자할 우려 및 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변화에 의한 효과를 저평가하여 투자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 판매 담당 임직원

1.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하며 상품의 위험도, 최대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임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3호]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투자유형)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청약철회 요청서

1. 고객 정보

고객명 :	계좌번호 :
-------	--------

2. 청약철회 대상상품

■ 투자성상품

-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단위형펀드限),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 비금전신탁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성상품

-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영업일 아님)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약철회 대상상품 가입정보

청약철회 대상상품	☐ 투자성상품 : _____
	☐ 대출성상품 : _____
계약 체결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유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 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자 _____(서명/인)

[별지 제15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1. 고객 정보

고객명 :	계좌번호 :
-------	--------

2. 계약해지 대상상품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3. 계약해지 사유 및 근거

계약해지 사유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증빙 자료	

4. 유의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서명/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1. 고객 정보

고객명 :	계좌번호 :
-------	--------

2. 계약해지 대상상품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3.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사유	
(거절시) 회사의 근거	

4.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6호]

자료열람 요청서

1. 고객 정보

신청인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계좌번호	

2. 자료열람 목적

구분	요청사유 기재
투자자 본인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 구제 목적	(예시) 민원/소송과 해당 자료 간의 연관성 등 기재

3. 열람 요청자료 세부내용

관련 상품명	
열람 요청자료	■ 열람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자료 기재 - 예시1 : 2021.12.21 오전 9시 무렵 통화 녹취 - 예시2 : 2021.12.21 가입한 xxxx 펀드의 투자설명서
열람 방법	☐ E-mail (희망시 E-mail 기재 :) ☐ 우편발송 (희망시 주소 기재 :) ☐ 기타

4. 유의 사항

- 본 요청서는 금소법 제28조 제3항 및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과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판매 관련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등에 대한 자료를 투자자 본인이 요청하는 것으로 회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요청자료를 본 요청서에 명시된 자료 열람 목적 외로 활용(인터넷, SNS 게시, 언론 매체 제공 등)하거나 제공받은 녹취를 통화 상대방(당사 임직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께서는 제공받으신 자료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서명/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자료 열람권 -

토스증권 주식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님의 아래와 같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리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고객의 자료열람 요청 관련 제반업무 처리 (접수, 검토, 제공 등)
수집·이용 항목	고객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계좌번호), 자료열람 목적, 열람 요청자료 세부내용(열람자료 현황, 열람 방법 관련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발송 주소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자료 열람권 관련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본 동의는 "고객님이 요청하신 자료 열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동의이므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관련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년 월 일

신청자 _____(서명/인)

토스증권 주식회사 귀중

[별지 제17호]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1. 목적

- 동 기준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가.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 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나.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판매회사는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다. 위험등급 체계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라. 위험등급 산정방식

- 판매회사는 제 16 조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3.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1) 시장위험이란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하며,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3.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 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 2) 신용위험이란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하며, 신용위험 등급은 법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35 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 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 등급	5 등급	4 등급	3 등급	2 등급	1 등급
장기등급	국공채 등 ^{주 1)} , AAA ~ AA		A+ ~ A-	BBB+ ~ BBB-	BB+ ~ 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주 1) 법 제 118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주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 3)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3.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4)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에는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품은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 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 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 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금소법 제 19 조 제 2 항에 따른 설명서에 별도로 기재한다. 세부사항은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에 관한 세부내역을 말한다.

*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6)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7)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3.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마.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단, 현재 판매를 중단한 금융상품, 투자자가 MTS, WTS 등을 통해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바.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사.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가.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 [표2]의 별도 위험도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표2]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구분	주의	경고	위험
장외 파생상품	원금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금리스왑, 옵션매수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나.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3]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3]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 등급 (매우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4]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4]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주1)} 사용)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주1)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가) 레버리지·인버스 ETF ^{주 2)}는 VaR 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 등급 상향한다.

주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 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

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다)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주3)}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주3)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라)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2.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파생결합증권

-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5]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5]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 분 ^{주1)}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주1)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상장지수증권(ETN)은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일정요건^{주2)}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

주2)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2.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라. 지분증권(주식 등)

-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1)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2)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3)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마.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1) 회사채^{주1)}는 [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주1) 법 제4조 제3항 및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 2)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2.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주2)} 상향)하고,

주2)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한다.

- 3)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1)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2)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3)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주3)}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주3)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제4항 후단(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사.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2)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기타

-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이 가이드라인은 '24.1.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끝.